

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

의안 번호	308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2017년 9월 19일자로 개정·시행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
-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,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·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
- 2017년 안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우리 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

제안근거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5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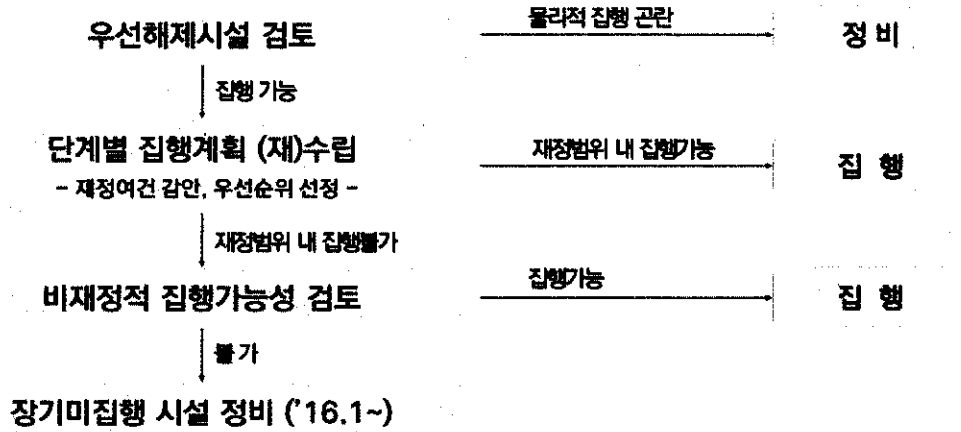
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- 관련부서 의견 수렴 : 2017. 11.
- 시의회 의견청취 : 2017. 12.
-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: 2017. 12.

□ 주요 내용

- 「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」(2015.1, 국토교통부)(이하가이드라인)을 준용하여 우선해제시설 분류, 중기지방재정계획 범위 내 존치가능시설 판단 및 집행 계획 수립

<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>



○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

연번	시설	미집행 현황 (총개소)	10년 미만				10년 이상(장기미집행시설)				비고
			개소	연장 (km)	면적 (㎡)	사업비 (백만원)	개소	연장 (km)	면적 (㎡)	사업비 (백만원)	
	계	374	225	38.579	0.136	317,138	149	92981	4.117	1,264,295	
1	도로	253	172	38.579	-	267,305	81	92981	-	980,638	
2	주차장	47	27	-	0.029	15,089	20	-	0.009	7,276	
3	공원	55	20	-	0.085	25,483	35	-	2.199	147,166	
4	녹지	11	3	-	0.006	1,923	8	-	0.083	18,467	
5	유원지	1	-	-	-	-	1	-	1.783	100,000	
6	학교	2	-	-	-	-	2	-	0.031	4,750	
7	공공청사	2	1	-	0.001	67	1	-	0.003	5,000	
8	체육시설	2	2	-	0.015	7,271	-	-	-	-	
9	사회복지시설	1	-	-	-	-	1	-	0.009	998	

○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(안)

구 분	재정적 집행시설						비재정적 집행시설			비 고
	개소수	시 설 면 적 (km ²)	사업비 (백만원)	1 (17~19)	2-1 (20~21)	2-2 (22년 이후)	개소수	면적 (km ²)	사업비 (백만원)	
총 계	367	131.025 / 2.399	1,466,867	245,954	834,594	386,319	7	0.535 / 1.854	114,566	17년~21년 사업비: 1,080,548
도 로	252	131.025	1,245,798	139,635	777,125	329,038	1	0.535	2,145	폐지예정 시설제외
주차장	47	0.038	22,365	5,402	-	16,963	-	-	-	폐지예정 시설제외
공 원	55	2.284	172,649	92,172	46,276	34,201	-	-	-	
녹 지	10	0.053	17,786	4,485	9,993	3,308	1	0.036	2,604	
유원지	-	-	-	-	-	-	1	1.783	100,000	
학 교	-	-	-	-	-	-	2	0.031	4,750	폐지예정 시설제외
공공청사	-	-	-	-	-	-	2	0.004	5,067	
체육시설	2	0.015	7,271	4,060	1,000	2,211	-	-	-	
사회복지 시설	1	0.009	998	200	200	598	-	-	-	

○ 2020년 7월 2일자 실효 예정시설

연번	시설	10년 이상(장기미집행시설)				비 고
		개소	연장 (km)	면적 (km ²)	사업비 (백만원)	
계		15	3.233	1.416	100,519	
1	도로	9	3.233	-	24,283	
2	공원	6	-	1.416	76,236	

□ 관계법령 발췌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,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·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.
-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,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,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95조(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·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.
- ③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,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

첨부자료 : 안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1부. 끝.

※ 참 고

-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(도시계획시설 재검토) : 2015년 ~
 - 2015. 6. :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
 - 2016. 7. :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(안) 수립
 - 2016. 8. : 시의회 보고
 - 2016. 10. : 우선해제시설, 단계별집행계획 공고

○ 2016년도 우선해제시설 분류 내역 (사업비 : 21,790백만원)

구분	위 치	시 설 명	사업비 (백만원)	해제 사유	비 고
합 계			21,790		
1	와동	소로 3-751	511	•보전녹지관통, 지형여건상 설치 불가능	폐지에정
2	와동 258-7	13호 고등학교	7,297	•지형조건상 설치가 불가능	폐지완료
3	사2동 산118-8	16호고등학교	2,120	•지형조건상 설치가 불가능	폐지완료
4	월피동 산47-1일원	사회복지시설5 (노인치매 및 정신건강센터)	11,862	•경사도 17도 이상	폐지완료

○ 폐지시설현황

구분	위 치	시 설 명	사업량 (m/m)	해제 사유
합 계			660m/67,172m ²	
1	일동	소로1-267-1	246m	• 일동복지타운내 시설로 사업비과다, 현장여건 등 관 련부서검토결과 도시계획 시 설폐지 요청
2	일동	소로3-267-6	414m	
3	일동산15-1일원	30호고등학교	25,263	
4	일동 산24-19일원	사회복지시설14 (일동종합복지관)	15,572	
5	일동 산24-23번지 일원	체육시설32	15,798	
6	일동 산24-26일원	주차장113	10,539	

○ 폐지(계획)시설현황

구분	위 치	시 설 명	사업량 (m)	해제 사유
합 계			48,834	
1	원곡본동 산26-9일원	주차장139	2,218	• 사업성 결여
2	사동 산36일원	21호고등학교	46,616	• 사업자 설립계획 취소